

준비서면

사 건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 [2022머138837 공유물분할]

원 고 송동일 외 1

피 고 강용호 외 1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6. 남진현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 피고는 원고의 모든 분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원고의 모든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2. 다시 강조합니다만, 본 소송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태영의 분할소송으로 인해 토지 일부 (분양당시 가분할도 상 A-1 지역 일부)가 상실되어, 토지의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자들의 토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강태영 분할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본 소송의 원고 및 모든 공유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런 책임을 애써 외면하며 A-1지역이 저절로 상실된 것처럼 말하면서 원고와 A-1지역 이외의 공유자에게만 이로운 분할안을 만들어 A-1지역 공유자의 희생만 강요합니다.
3. 이렇듯 분양 당시의 토지 위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남진현이 23년 4월 18일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23년 9월 4일에 피고 황용준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3년 3월 22일에 원고와 피고들이 참여하여 '분할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분할원칙은 공유자 모두가 합의한 유일한 분할근거입니다.

4. 그러나, 원고는 분할원칙 수립에 스스로 직접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원칙'과 무관한 원고 개인의 고집을 바탕으로 본 소송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의 주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한번도 분할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 분할소송을 원고의 주관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양 당시의 가분할도가 의미를 상실한 상황에서 '분할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5. 피고 황용준이 9월4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분할원칙 4개 항목 중 3개 항목만 언급되고 있는데, 네번째 항목은 '조정회의 참석자 위주로 토지를 배치한다'는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분할원칙의 네번째 항목에 근거하여 A-1 지역의 참석자는 본 피고가 유일하여 본 피고가 A-1지역에 배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본 피고의 토지 위치는 분양 당시 가분할도 상 A-1지역이며, 분할원칙에 근거할 때도 본 피고의 위치는 가분할도 상 A-1지역입니다.

이렇게 '분할원칙'을 준수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작성된 분할안은 기 제출된 본 피고의 4월18일자 분할안과 피고 황용준의 9월 4일자 분할안 뿐입니다.

6. 그러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분할원칙을 무시하며, 주제넘게 본 피고의 토지 위치를 원고 임의로 지정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유 토지 전체를 원고의 개인 소유인 양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고는 객관적 합의된 기준인 '분할원칙'이 아닌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치 원고의 땅을 배급하듯 어이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본 피고의 토지 위치를 강요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7. 아래의 그림1은 원고의 분할안입니다. 분할원칙에 따라 A-1d 지역이 본 피고의 위치임에도, 원고는 본 피고의 허락없이 제 토지 위치를 엉뚱한 곳에 할당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림1과 같이 본 피고의 토지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의 모든 분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대전지법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 2023.10.10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그림1. 원고의 분할안

8. 분할원칙에 근거하여 분양 당시 A-2지역이 원고의 토지로 인정될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분할원칙을 스스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림1 A-2c, A-2d 지역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모두 자동으로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그림1 A-2c, A-2d지역을 소유하는 모든 분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9. 또한, 본 소송기간 동안 이미 제출된 분할안 및 향후 제출 예정인 어떤 분할안의 경우라도, 그림1 A-1d지역에 본 피고의 토지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분할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10. 원고는 본 소송 및 조정기간 동안 합의나 타협이 아닌 강요와 횡포로 일관해 왔습니다. 원고의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나쁜 놈이 되는 이상한 이분법적 논리로 일면식도 없던 본 피고를 시종일관 모욕하고 무시해왔습니다.
11. 가장 심각한 것은 분할원칙 미준수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분할안을 따르지 않으면 원고와 일부 피고만 분할 해 갈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횡포가 조정기간 및 소송기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원고의 횡포와 독단 때문에, 본 피고는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어 공유자 대화방에서 일찍이 소외되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12. 일부 피고는 특별한 손해가 없으니 원고의 분할안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매를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고의 분할안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피고도 있습니다. 원고는 이런 점을 노리고 횡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고의 횡포 및 독단을 볼 때, 토지분할에 임하는 진의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원고의 횡포로 선량한 공유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3. 판사님, 본 소송에서 조정 및 합의과정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형태의 변형이 없었다면 부분 분할에 동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유자들의 토지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때문에, 본 소송도 조정기간을 비롯하여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었지 않았습니까? 부분 분할의 근거가 이미 상실되었으며, 부분 분할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14. 한편으로, 합리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무례와 조롱이 도를 넘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함에도 본 피고에 대한 원고의 무시와 조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고조차 무시하면서 원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리석은 원고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선의를 거둬들입니다.

판사님, 지금까지 진술한 사유로 아래와 같이 본 피고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원고의 모든 분할안뿐만 아니라, 10월18일까지 제출되는 모든 분할안에 대하여

1) 분할원칙에 따라 상기의 그림1 A-1d지역은 본 피고의 토지이므로,

그림1 A-1d지역을 본 피고의 토지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분할안에 반대합니다.

2) 원고가 분할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2지역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 근거가 없어, 상기의 그림1 A-2c, A-2d지역을 원고가 소유하는

모든 분할안에 반대합니다.

3) 토지의 일부 분할의 근거가 없어 일부 분할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 합니다.

4) 원고는 유일한 분할근거인 분할원칙과 무관한 괴상한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분할원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논의도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2023년 10월 12일

피고 6. 남진현

대전지방법원 민사 13 단독[제6상근조정(회부)] 귀중